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

제정: 2016.04.11

개정: 2019.04.09

전부개정: 2019.09.26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"법" 이라 한다) 제58조,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2호에 의거하여 씨스퀘어자산운용(이하 "회사"라 한다)이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, 법 시행령, 법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등(이하 "관련 법규"라고 한다)과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수수료의 종류) 이 기준에서 "수수료"라 함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

- 1. 보수: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 - 가. 집합투자업자보수: 회사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나. 판매보수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다. 신탁업자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·관리의 대가로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.
 - 마. 성과보수: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회사가 받는 금전(법 제86조,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-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)을 말한다.
- 수수료: 투자자가 부담하는 판매,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.
- 가. 판매수수료: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 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한다.
- 나. 환매수수료: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

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로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된다.

- 다. 투자자문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투자자문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- 라. 투자일임수수료: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업무에 대한 대가로 투자일임재산으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하며,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받는 성과수수료를 포함한다.

제4조(수수료 부과 기준)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,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,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.
- ③ 회사가 성과보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으며, 검증가능하고 조작할 수 없는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한다.
 - 2.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는다.
 - 3.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(負)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.

제5조(수수료의 부과 절차) ① 수수료에 대해 심의하는 경우,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② 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,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혐의를 거친다
- ③ 투자자문수수료와 투자일임수수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업무 운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투자자와 합의하여 체결한 투자자문계약서 혹은 투자일임계약서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제6조(공시 및 통보)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,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회사의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의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영업 등록 (인가)을 신청하여 통지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